

CEO BRIEFING

제699호
2023. 5. 25.

지방시대 핵심 에너지정책, 지역별 전기요금제

연구책임 설홍수 경북연구원 연구위원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통과로 가시화된 지역별 전기요금제

- 5월 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지역별로 전기요금에 차등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10년 전부터 여러 지역에서 주장해 온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도입과 시행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국 단일 전기요금제에 대응하여 지역별 공급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지역별 공급원가에 차이가 나므로 소매전기요금도 지역별로 달라진다. 발전원 유형, 전력소비 패턴, 발전소와의 거리, 송전선로 이용률 등은 지역별로 차이가 나 전력 공급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 전기요금제는 용도별, 계절별·시간대별로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모두 공급원가 차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에 특별법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의 당위성

- 발전 및 송전에 따른 각종 비용이 지역에서 발생하지만 소매전기요금은 이러한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경북·부산·충남 등에서는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발전소에서 대규모 전력소비지역인 수도권 및 대도시권으로 송전 시 연간 약 2조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수도권 및 대도시권 개발로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망 보강에 78조원의 투자계획(전력계통혁신방안, 2021년)을 수립한 바 있다.

- 발전소 건립·운영, 송전선로 건설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역시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된다. 예컨대, 송전선로 건설 시에는 피해에 대한 갈등으로 보통 10년 이상이 소요되며, 각종 규제에 의한 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가 하락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원전의 입지 시 가동 중 안전, 원전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비용)를 지역에서 감수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비용은 전국적으로 공통 부담하고 있어 수도권 및 대도시권의 대규모 전력소비자의 수익자부담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지역신호 제공, 원가주의 실현, 사회적비용 감소라는 점에서 제도 도입의 당위성이 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가격신호로 발전소 입지에 신호를 제공하고, 발전소의 지역별 분산 입지를 유도한다. 발전 및 송배전 과정의 공급비용을 반영하여 원가주의를 실현하고, 전력회사는 총괄 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요금 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발전소 건립, 송변전망구축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의 효과는 전기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연구용역에서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다. 또한 전력산업 구조에서 차이가 나므로 직접적 비교는 어려지만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다.

■ 특별법에 따른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방향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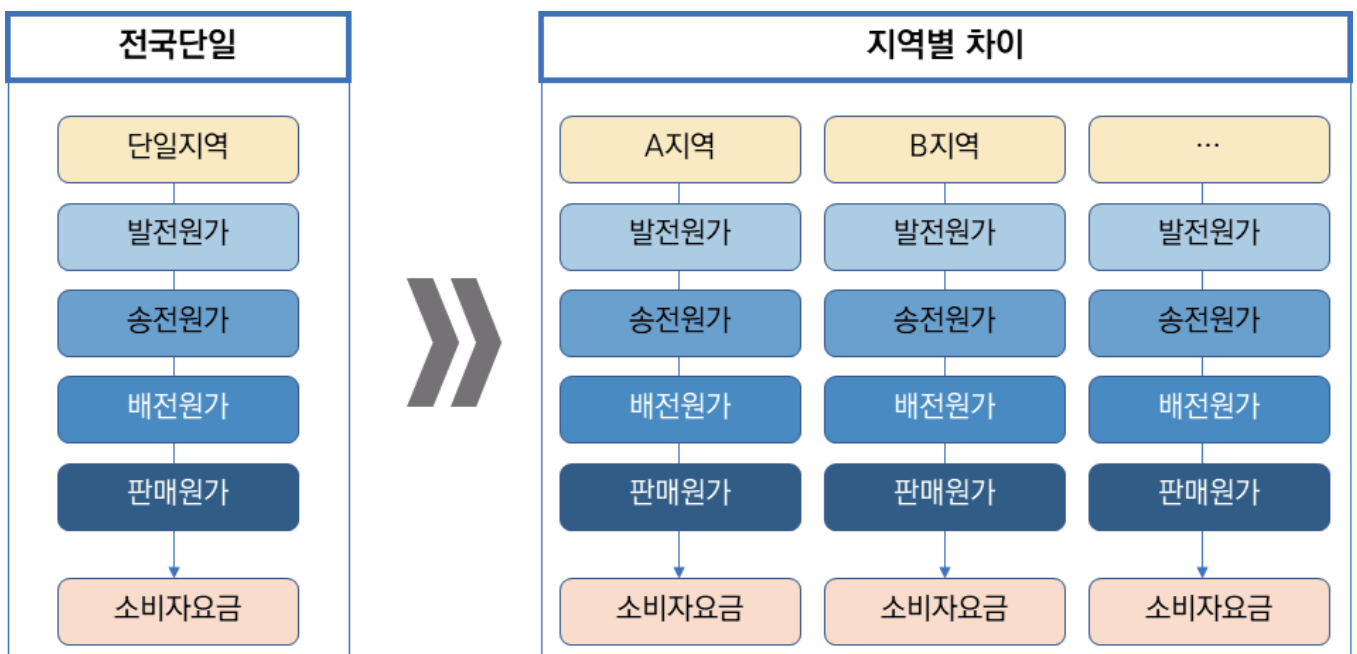
- 중앙정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지역별 발전·송전 원가를 분석하여 지역별 전력 공급원가를 산출하고 전기요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지역구분과 공급원가 산정방식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전기요금 원가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6개 용도별로 모두 도입하기보다 전력판매량의 54.6%를 차지하는 산업용부터 우선 도입하고 다른 종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지역의 입장에서는 첫째, 특별법의 목적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 시행을 건의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현 정부가 준비 중인 기회발전특구를 포함하여 지방투자를 촉진하는 특구 내 투자기업에 대해 우대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 둘째, 상대적으로 낙후된 발전소 주변지역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산업용 전기요금 보조사업 지원 용량을 확대하고(200kW→300kW), 탄소중립을 고려한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석탄보다 지원금이 낮은 원자력 지원금 단가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
- 셋째, 미국 유틸리티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업투자 촉진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가칭)지역경제발전 요금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 규모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이상의 내용은 이 연구를 “요약” 한 것입니다.

1.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의의

■ 지역별 전기요금제란 지역별 공급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제도

- 지역별 전기요금제란 전국단일 전기요금제에 대응하여 지역별 공급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제도로 정의 가능
 - 전국단일 전기요금제는 우리나라를 단일지역으로 가정하고 이에 관한 발전원가, 송전원가, 배전원가, 판매원가를 산정하여 소비자요금에 반영
- 우리나라 지역별로 발전소, 송변전선 입지가 달라 발전원가, 송전원가, 배전원가의 차이 발생
 - 전력 공급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발전원 유형, 전력소비 패턴, 발전소와의 거리, 송전선로 이용률 등
 - 원자력, 화력, LNG 등 지역별 발전소의 발전원은 상이하며, 발전원가에 영향을 미침.
 - 지역별 사회경제구조 차이는 전력 사용량, 전력사용패턴에 차이에 영향을 미침.0
 - 전력소비지-발전소 거리에 따라 지역별 송전거리에 차이가 남.
 - 지역별 산업구조 및 규모 차이에 따라 송전선 이용률에 차이가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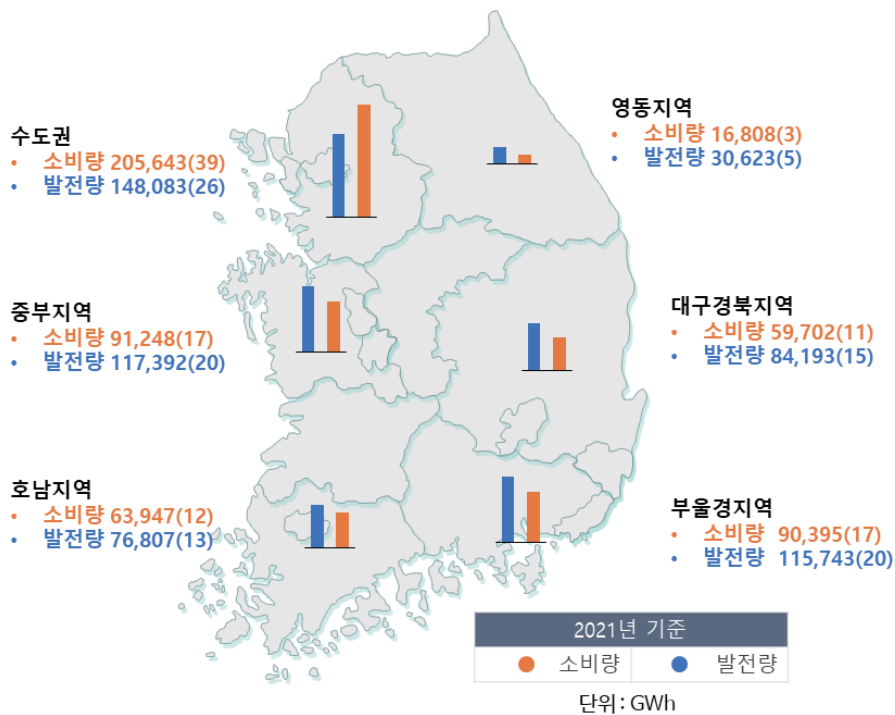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4.06., 전력계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가격신호 제공방안 연구

▲ 지역별 공급원가 차등 개념

■ 지역별 전력 공급비용을 고려한 요금제 도입이 주요 배경

- 지역별 전기요금제 주장 배경은 발전 및 송전에 따른 각종 비용이 지역에서 발생하지만 소매전기요금은 이러한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점
 - 전국을 6대 권역으로 구분할 때(제주도 제외) 수도권만 발전량보다 소비량이 더 큰 상황
 -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 전력사용량은 국내 사용량의 61.5%(2021년)이나, 전력생산량 비중은 국내 생산량의 39.0%(2021년) 정도
- 대도시권 전력공급을 위해 발전소 및 송변전망 건설에 많은 경제적·사회적 비용 발생¹⁾



자료 : 전력통계정보시스템자료를 가공

▲ 전국 6대 권역별 전력 생산 및 소비량 현황

- (사회적 비용 문제) 발전소 건립 및 운영, 송전선로 건설 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 각종 규제에 의한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지가 하락 발생
 - 우리나라 전력수급체제는 ‘복상조류’ 형태로, 이는 발전설비가 집중된 비수도권의 전력을 발전설비가 부족한 북쪽의 수도권으로 유통하기 위한 것
 -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지역의 불만을 유발하는 765kV 및 345kV 등 대규모 장거리 초고압 송전망은 이러한 복상조류에 부응하여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건설되어왔으며, 부하량이 큰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 전력공급 과정의 송변전 및 배전 손실량은 증가 추세

1) 2021년 수도권의 전력 공급능력은 발전을 통해 71.8%를, 유통전력을 통해 28.1%를 공급하나 2034년에는 발전 63.8%, 유통전력 36.2%로 변화 전망



주 : 박명덕(2015.12.)의 14쪽 그림을 토대로 재구성

▲ '복상조류' 형태의 국내 송전망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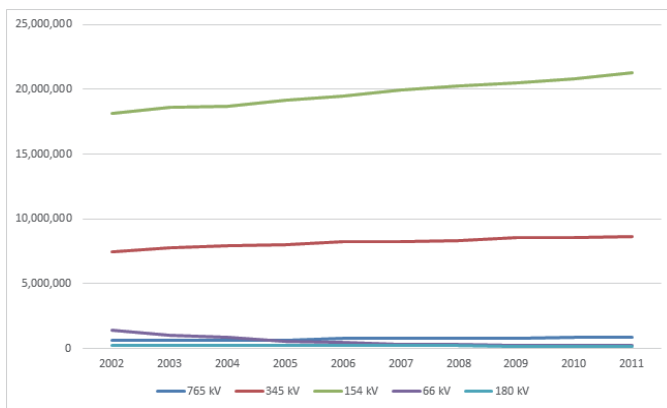
▼ 송변전 및 배전과정의 전력손실량

구분	종합손실량	송변전손실량	배전 손실량
2021년	19,424,218	8,651,079	10,773,139
2018년	19,359,355	8,619,366	10,739,989
2015년	17,979,210	7,953,844	10,025,366
2012년	17,291,504	7,640,896	9,650,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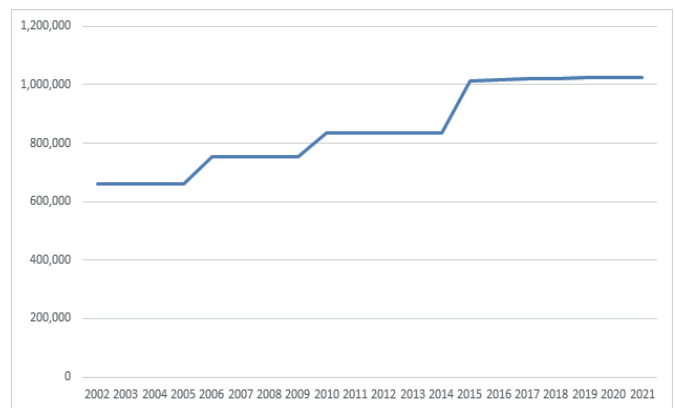
주 : 단위는 MWh

자료 : 전력거래소, 전력정보통계시스템

- (전력망 비용 문제) 송전선로 건설에 보통 10년 이상 소요, 2030년까지 전력망보강에 78조 원 투자 계획(산업부, 2021, 전력계통혁신방안)
-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송전선로는 전압에 따라 765kV, 345kV, 154kV로 구분하는데, 345kV는 기간 송전망으로, 154kV는 지역송전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전력 송전망인 765kV를 1998년부터 설치하여 점차 늘려가는 추세
 - 765kV 송전설비는 345kV나 154kV 설비와 같이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모습이며, 설치 시간이 오래 소요 되는 반면, 설치될 경우 설비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박명덕, 2015.12.)



송전설비 회선길이



송전설비(765kV) 회선길이

자료 :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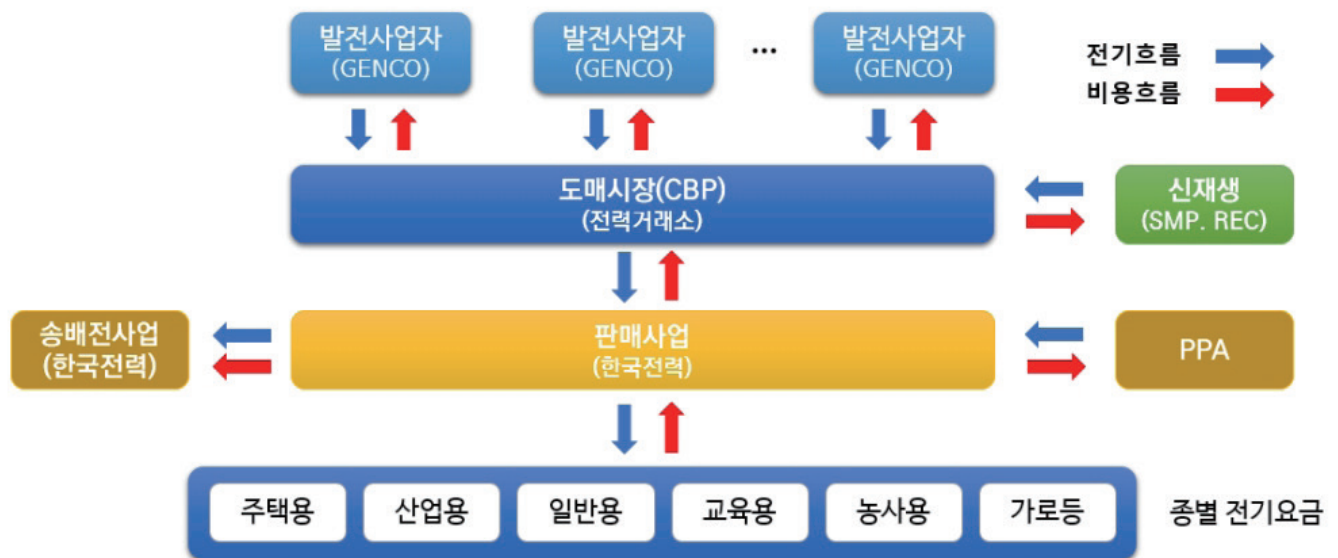
▲ 송전설비 회선길이 추이(2002~2021년)

- (수익자 부담 원칙) 사회적비용, 전력망비용 등에 따른 부담은 전국적 공통 부담하여 수익자부담원칙²⁾을 훼손
- 송전거리를 고려할 때 비수도권 발전측에는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서 송전하기 때문에 송전거리가 짧은 수도권 대비 이용요금이 높아야 하고, 수요측에서는 용통전력을 공급받는 수도권의 이용요금이 잉여전력을 제공하는 비수도권보다 높아야만 형평성에 부합
 - 현재 지역 구분 없는 전기요금제는 수도권 소비자들을 위해 비수도권 발전소 지역 주민들이 송전 시설 건설과 송전손실 비용까지 부담하는 결과 초래
- 우리나라 계약종별 전국 단일 전기요금제도는 비정기적 전기요금 조정, 정책적 고려에 의한 요금 동결, 국민 여론에 따른 특례혜택 부여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가격신호가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

2)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의 공급 비용을 그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시 고려사항

-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소매경쟁은 없고 발전경쟁만이 존재하며, 한전이 소매판매를 독점하고 있기에 사실상 소비자의 전력시장 참여와 선택권이 없는 상황
 - 최종소비자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음으로 판매사업자들도 도매시장가격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음.
-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특성인 하루전시장³⁾은 가격발전계획과 운영발전계획의 괴리가 크고, 변동비 반영시장(CBP)은 송전혼잡 관련 가격신호를 제공하지 못함⁴⁾
 - 대부분 발전기가 하루전시장에 따라 계약량과 다르게 운영되므로 시장계획 외적인 전력량에 대한 정산금이 크게 발생⁵⁾
 - CBP시장에서는 발전변동비에 기초하여 전력거래 가격이 결정되므로 송전혼잡 관련 가격신호를 제공하지 못함⁶⁾
- 발전 및 도매시장 비용 상승은 전기요금으로 이어지나 공공요금으로 억제되므로 시장원리에 따른 요금 결정구조로 보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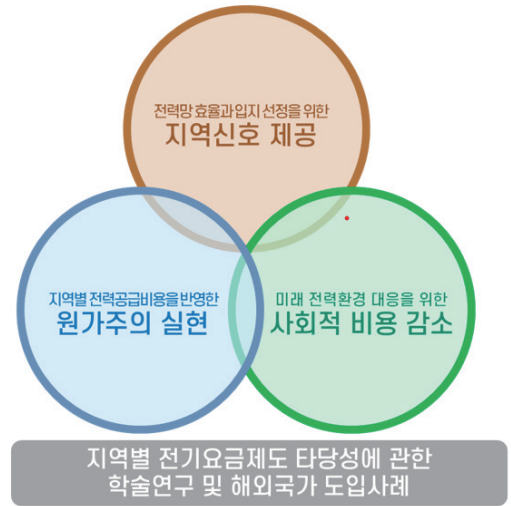
▲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의 전기 및 비용 흐름

3) 하루전시장(Day Ahead Market)에서 거래 가격은 하루 전에 확정되며, 매시간대별 예측수요를 충족시키는 한계발전기의 변동비로 계통한계가격이 결정
 4) 전기저널(2019.11.7.)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
 5) 예비력 확보, 송전망 인출제한 등으로 시장계약량 대비 실제전력량이 감소하는 제약비발전(COFF; Constrained OFF), 열공급 운전, 전압 유지를 위한 필수운전 등으로 시장계약량 대비 실제전력량이 증가하는 제약발(CON:Constrained ON)이 발생
 6) 전기저널(2019.11.7.)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

2.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의 당위성

■ 지역신호 제공을 통한 발전소의 지역별 분산 입지 유도

-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지역 가격신호로 발전소 입지에 신호를 제공하고, 발전소의 지역별 분산 입지를 유도
 - 지역 가격신호란 전력계통 운영면에서 계통제약을 감소시키는 시장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제약을 증가시키는 참여자에게 패널티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체제
- 지역 가격신호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면 발전사업자는 가격이 높은 입지에 투자하고, 수용가는 낮은 곳으로 이전하여 지역적 전력수급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는 효과 발생
 - 지역 간 수급불일치로 인한 계통비용을 비용유발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지역 간 교차보조현상 완화



▲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당위성

■ 지역별 공급원가 산정을 통한 원가주의 실현

-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지역별 공급원가를 반영함으로써 전기요금의 총괄원가원칙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안
- 제도 도입을 통해 발전 및 송배전 과정의 공급비용을 반영하고, 전력회사는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요금 산정 가능
 -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 지금까지 발전소 및 송전망 건설에 따른 많은 갈등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
 - 화력발전소 입지, 신·증설 및 운영에 따라 환경오염, 온배수 문제, 보상 갈등, 지역공동체 균열 등 많은 지역갈등 발생
- 향후 전기화 트렌드, 탄소중립 등으로 전력설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력설비의 분산, 송전망 건설 최소화, 주민수용성 제고 등으로 갈등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기여



<밀양 송전망 갈등>



<동영 LNG발전소 건립 갈등>



<여수해역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갈등>

▲ 발전소 및 송전망 건립에 따른 갈등 사례

■ 학술적으로 검증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효과

- 송전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부과할 경우 수도권 부담액 증가, 비수도권 부담액은 감소하며(박명덕, 2015), 2030년 전력가격 차등화를 도입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송배전비용뿐만 아니라 권역별 경제적 파급효과에도 차이 발생(한국환경연구원, 2021)
- 우리나라 송전선로 운영실적에 따라 지역별 한계가격(LMP) 차등 효과가 발생하고(산업통상자원부, 2014),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이 30%일 경우 지역별 한계가격(LMP)의 지역별 차이가 두드러짐(안재균, 2021).

■ 선진 외국에서도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 발전 부문에만 경쟁체제를 도입한 국내 전력산업과는 달리 해외 주요 국가는 발전·송전·배전·소매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지역별 전기요금제 운영 중

	← 시장경쟁				→ 공공독점
국가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
주요전력회사	민영(5개)	민영(10개)	민영(4개)	국영(1개)	국영(1개)
발전	경쟁	경쟁	경쟁	경쟁	경쟁
송배전망	독립법인	독립법인	독립법인	독립법인	미독립
소매	경쟁	경쟁	경쟁	경쟁	독점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2022.7.21.

▲ 주요국 전력산업 구조 비교

- 미국 도매시장 가격은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여 결정되는 지역별 한계가격(LMP) 채택 중
- LMP는 발전비용, 송전 혼잡비용(congestion), 송전 손실(loss)을 모두 반영한 가격
- 영국의 송전요금체제는 발전측과 수요측이 27:73으로 분담하며, 발전측은 27개 지역별 요금, 수요측은 14개 지역별 요금을 적용하고 있고, 호주의 경우에도 송전손실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3.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방향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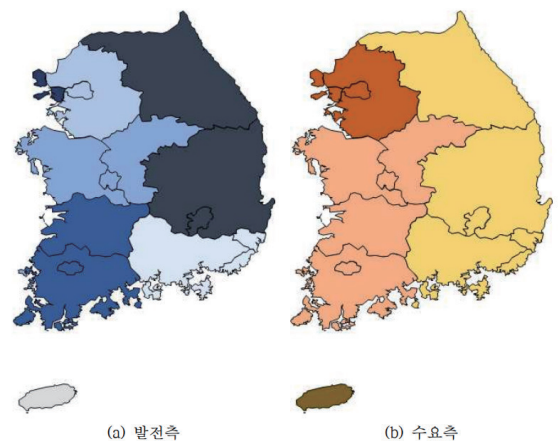
■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방향과 절차(안)

- 전기요금의 가격기능을 강화하고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소비자의 만족과 이익을 높이는 전력시장 선진화에 기여하도록 기획
 - 전력거래가격의 가치 변동을 반영하는 정부의 양방향 가격입찰제 도입과 함께 전력시장 가격기능 작동에 기여하도록 설계될 필요
- 지역별 전력수급 균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 설정
 -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기요금 정책화를 강화할 필요
 - 전력의 가격과 양이 기업투자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전기요금을 활용
-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을 확인하여 제도적 기반 확보
 - 공동화, 제도 설계 및 평가, 의견 수렴, 시범 프로그램 실행, 시행 및 모니터링 등의 절차 필요



■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준비

-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전력공급을 위한 지역별 공급원가 산정이 선행될 필요
 - 현 전력도매시장 가격체계(SMP)는 육지와 제주권으로만 구분
-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논리로써 지역마다 공급원가 차이가 발생함을 제시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합리적 지역구분을 추진
 - 지역 구분은 17개 광역자치단체별 또는 비슷한 전력 계통에 따른 권역별로 구분하는 등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전력구조 및 특성을 고려한 분석 전제
 - 아울러 지역별 전력공급원가에 기초한 지역별 전력도소매 시장 운영 방안 마련 필요



자료 : 한국전력공사, 2017.11.

▲ 지역별 구분 예시

- 계약종별 판매전력량 중 산업용은 50% 이상으로 전기요금 판매원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지방 투자에도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제도 도입 시 우선적으로 고려
 -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과정에서 6개 용도별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은 다소 복잡하게 적용되어 제도 도입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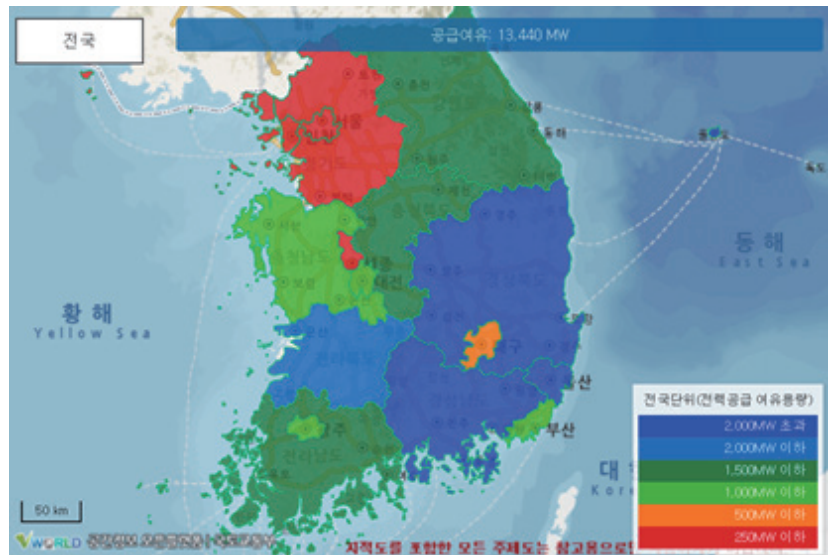
■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활용한 지방투자 촉진 추진

- 현 정부는 지방시대 지역투자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준비 중이므로, 이러한 기회발전특구를 포함하여 지방투자를 촉진하는 특구 내 투자기업에 대해 우대 요금제를 도입
 - 지방투자촉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정책특구를 대상(ex. 기회발전특구, 교육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으로 특구 전기요금제 신설(재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지방투자촉진특구 투자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기본요금 할인
 - 지역별 일정규모에 대해서만 전기요금 기본요금 할인 적용

- 전력공급여유지역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유치 등 전력사업화를 선도적으로 추진
 - 전력공급에 여유가 있는 지역의 전력을 활용함으로써 전력계통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의 전력 사업화 확대 가능
 - 데이터센터 비수도권 입지 시 송전 비용 감면, 전기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 발전소 주변지역 투자 확대를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법률 내 기업지원 내용을 강화

- 법률상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이며, 투자가 적어 상대적으로 낙후
- 산업용 전기요금 보조사업 지원
용량 : 200kW → 300kW(중소기업 범위까지 계약전력 현실화)
- 원자력발전 지원금 상향 : 0.25원/kWh + α(원자력발전의 탄소중립 기여도, 타 발전원과의 형평성 고려⁷⁾)



자료 :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 한국전력의 '전력공급 여유지도'

7) 원자력 지원금 단가는 0.25원/kWh으로 무연탄 화력(0.3원/kWh) 보다 0.05원/kWh 낮은 실정

- 지역에 입지한 공기업 중심으로 ‘가칭)지역경제발전요금제’ 도입·추진
 - 미국 각 주정부는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기요금 할인제도인 EDR (Economic Development Rate)을 도입하여 시행 중
 - 미국 유틸리티업체인 캘리포니아주 SMUD, SCE, 플로리다주 Florida Power & Light, 뉴욕주 Con Edison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요금 할인을 통한 기업 트레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일반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정당성 확보
-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이전에 전기요금 할인 요인이 큰 산업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200MW 총량 15~30% 범위 내 일정 기간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방안 도입, 요금제 적용대상기업의 심의를 위한 예컨대 지역 발전공기업 중심 지역위원회 운영 등

Economic Development Rate FAQs

EDR이란?

EDR(Economic Development Rate)은 유틸리티가 서비스 지역 내 사업체를 유치, 유지 및 확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센티브입니다. 자격을 갖춘 회사는 특정 서비스 영역 내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표준 요금에서 할인을 받습니다.

SMUD가 EDR을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너지 판매를 유지하고 늘리기 위해 SMUD는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현재 고객을 유지하며 부하 증가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는 방법 중 하나는 요금을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리조나, 워싱턴, 네바다, 텍사스 및 오레곤과 같은 다른 주에서는 훨씬 낮은 전기 요금을 제공하면서 유명 프로젝트 및 비즈니스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MUD는 회사가 특정 지역에 위치하기로 결정하는 데 전기 비용이 종종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새크라멘토 지역을 비즈니스에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EDR을 제공합니다.

EDR에 대한 변화는 지역 경제에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새크라멘토 지역에서 회사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위치로서 경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지역 전체의 SMUD 고객과 거주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은 더 많은 주택 판매, 소매 활동 및 추가 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며, 이 모든 것이 지역의 경제 활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 : SMUD 홈페이지에 게시된 EDR에 관한 질문의 일부를 정리

자료 : <https://www.smud.org/en/Rate-Information/Rate-archive/Economic-Development-Rate-FAQs>

▲ SMUD 사례

내용 문의

설홍수 경북연구원 연구위원(shs@gdi.re.kr)

054-820-2924



발행처 경북연구원

발행인 유철균

편집위원회 이재필 류형철 설홍수

본 원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홍익관

T. 054)841-7350 F. 054)841-7226

남부본원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 동산관

T. 053)770-5000 F. 053)770-5039